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I

안내서 개요 / 1

- 1. 필요성 2
- 2. 적용대상 3
- 3. 용어 정의 6

II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과 특성 / 11

- 1. 산업 및 서비스 현황 12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 16

III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원칙 / 19

IV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 25

- 1. 기획 및 설계 단계 27
- 2. 촬영(수집) 단계 41
- 3. 이용 및 제공 단계 57
- 4. 보관 및 파기 단계 65
- 5. 상시 보호조치 70

V

개인영상정보 처리 유형별 시나리오 / 75

VI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 85

- 1. 영상기기운영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안내 86
- 2. 제품·서비스 개발자 또는 제조사를 위한 안내 87
- 3. 사적 목적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87

VII

안내서의 활용 / 89**부 록 / 93**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94
- 2.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 97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I

안내서 개요

1. 필요성
2. 적용대상
3. 용어 정의



안내서 개요

1 | 필요성

- 기술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스마트 가전 등의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기계 장치가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판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
- 그러나, 영상처리와 관련한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산업계는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에 어려움 호소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2023. 9. 15.)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간의 합리적 균형을 위한 규율체계를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25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사유(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정보주체가 거부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단,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방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촬영 사실 표시

- 본 안내서는 법 개정에 따른 준수·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사회 전반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자율주행 AI 등의 첨단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 반영('23.9.~'24.8.)

2 | 적용대상

- ❖ 본 안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수집)하는 자(‘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이하 약칭 ‘영상기기 운영자’라 함)를 대상으로 함
- ❖ 아울러, ‘영상기기운영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설계·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사등’이라 함)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적 목적 이용자’라 함)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안내함

가. 영상기기운영자

의무 **권고**

- ‘영상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말함, 이하 ‘개인영상정보’라 함)을 촬영하기 위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4-1호, 2024. 1. 4. 일부개정, 이하 ‘표준지침’이라 함)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말함

참고 업무의 개념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 42 판결 등 참조)
-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 위 '영상기기운영자' 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일시 등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면서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
 - 다만,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전혀 저장·관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참 고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파일의 개념(법 제2조제4호, 제5호)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함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판례 CCTV 설치·운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 영상을 생성, 기록, 저장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도18362, 2023. 8. 18. 선고 2023도6722, 2023. 6. 29. 선고 2018도 1917, 대전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노2726,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216993,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정536 등 다수)

- 아울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영상기기운영자'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저장·관리하면서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영상기기운영자'로부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나 그로부터 촬영(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 제25조제8항 또는 제26조 제8항에 따른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본 안내서의 '영상기기운영자' 준수 사항을 준용

나. 제조사등

권고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촬영(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이용, 저장, 관리 등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설계·제조하는 자를 말함
- ‘제조사등’은 위 ‘가’ 호에 따른 ‘영상기기운영자’의 준수사항을 감안하여 당해 ‘제조사등’이 기획·설계·제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설계·제조할 것을 권고함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한 규정이나 절차를 설계 중인 경우에도 참조 가능

참고 제조사등에 해당하는 사례

- 자율주행차, 서비스 로봇,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가전 등을 개발·제조하는 사업자
- 영상정보 처리에 기반한 서비스(예 : 관제시스템 등)를 개발하는 사업자

다. 사적 목적 이용자

권고

-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미나 친교 등의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 활동의 맥락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
- ‘사적 목적 이용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상의 각종 의무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인격권 등의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본 안내서에 따른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참고 사적 목적 이용자에 해당하는 사례

- 가정 내에서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가전(청소로봇 등)을 이용
- 여행 중 관광지에서 기념영상 촬영 또는 취미용 드론을 통해 주변경관 촬영 등
- 교통사고 발생시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

※ 영리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면서 유튜브 등에 지속 게재하는 자는 ‘영상기기운영자’에 해당할 수 있음(국세청은 유튜버, BJ 등의 신종 직업군에게 과세코드 신설 및 사업자등록 의무화)

3 | 용어 정의

구분	용어 설명
개인정보	<p>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법 제2조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가명처리를 거쳐 생성된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처리	<p>개인정보의 수집(개인 식별가능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포함),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법 제2조제2호)</p>
개인정보파일	<p>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 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함(법 제2조제4호)</p>
개인정보처리자	<p>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함(법 제2조제5호)</p>
개인영상정보	<p>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함(표준지침 제2조제9호)</p>
개인정보취급자	<p>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법 제28조제1항)</p>
개인정보 처리방침	<p>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법 제3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 한 것(법 제30조)</p>
개인정보 영향평가	<p>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법 제33조)</p>

구분	용어 설명
<p>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Privacy by Design)</p>	<p>제품·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파기 단계까지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 및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p> <p>①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② 초기 설정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보호를 내재한 설계, ④ 개인정보보호와 사업 기능의 균형, ⑤ 개인정보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보호, ⑥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가시성 및 투명성 유지, ⑦ 이용자 개인정보 존중 등 7대 원칙으로 구성</p>
<p>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p>	<p>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말함(법 제2조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p>
<p>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p>	<p>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아래와 같은 장치를 말함(법 제2조제7호의2, 시행령 제3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용형 장치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p>공개된 장소</p>	<p>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표준지침 제2조제11호)</p>
<p>업무의 위탁</p>	<p>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그로 인해 촬영(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법 제25조제8항,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p>
<p>익명정보</p>	<p>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법 제58조의2)</p>
<p>민감정보</p>	<p>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정보(법 제23조제1항)</p>

사 례 자동차등록번호가 촬영된 영상을 개인영상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 포함)의 정의(법 제2조제1호)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 자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입수가능성)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입수 가능해야 하고, 해킹이나 절취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 (결합가능성)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되는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결합에 수반되는 시간·비용·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지 않아야 함**

■ 자동차등록번호가 촬영된 영상의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 해당 여부

-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부여한 고유번호이므로 그 자체로서 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님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소유주의 성명과 자동차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음
- (예외적인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DB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
 - ① 자동차등록번호와 쉽게 결합 가능한 개인정보 DB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예 : 백화점 주차장 이용회원 등)
 - ②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소유주 등의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예 : 경찰관 교통단속 등)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문화센터)에서 회원 대상 주차비를 면제하기 위해 차량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 문화센터에서 보유중인 회원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음 • 경찰이 교통단속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CCTV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번호를 촬영한 경우 ☞ 경찰은 스스로 보유중이거나 다른 기관을 통해 입수 가능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 식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차량번호만을 수집한 경우 ☞ 자체 회원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주변 차량의 차량등록번호가 촬영된 경우 ☞ 스스로 또는 다른 기관의 차량등록번호 조회시스템 등을 통한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없음

⇒ 일반적으로 공개된 도로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주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참 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유형

① **착용형 장치**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카메라 有)	액션캠	바디캠

② **휴대형 장치**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스마트폰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③ **부착·거치형 장치** :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이동형 주차 단속 카메라	자율 주행 자동차 카메라	드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II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과 특성

1. 산업 및 서비스 현황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과 특성

1 | 산업 및 서비스 현황

- ❖ 스마트폰 발전 등으로 전통적인 카메라 산업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 중

* 일본 디지털카메라 판매량(CIPA) : ('10) 1억2천만대 → ('16) 2천3백만대 → ('22) 8백만대

가. 자율주행차

-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레벨 1~5 차량의 출하대수는 ('21) 4,458만 대 → ('26) 8,930만 대(연평균 14.9% ↑) 성장률 기록(IDC, '22.6월)
 - 최근 자동차 제조사는 기술개발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부분·반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집중하고 있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대중화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전망
 - *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서 분류한 자율주행기술 단계(0~5단계로 분류, 44쪽 참조)
- 현재 멀티 카메라, 라이다(Lidar), IoT 통신(커넥티드카) 등의 다양한 정보수집 방식을 사용하는 레벨 3~4 (조건부·고도·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차가 승객 운송, 물류, 농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 중
 - '24.7월 현재, 일부 국가(독일, 일본, 한국)에서 레벨 3 자율주행차 인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본격 양산을 위한 안전성 검증 추진

적용 분야	서비스 사례
승객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8월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 유상운행 허가 • 베이징('23.3월), 상하이('23.7월) 등에서도 자율주행 택시 유상 시범운행 •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셔틀 및 버스 등을 일정한 구간에서 시범운행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스타트업 OOO社は 델러스 ↔ 휴스턴 구간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MS에서 투자한 OOO社은 미국 ↔ 캐나다 B2B 서비스 시범운영 • 싱가포르 항만은 자율주행 트럭 선단 시스템과 V2V(차량간 통신)를 활용하여 터미널간 컨테이너 이동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OOO社は '22년 카메라를 통해 작물과 잡초를 구분하고 작물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자율주행 8륜 트랙터를 출시하여 판매

나. 로봇

- 자율주행로봇 출하량은 ('21) 4만대 → ('30) 34만대(연평균 27% ↑), 세계 시장은 '30년 95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ABI Research, '23.8월)
 - 관리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제조·유통시설에서 적극 도입 중에 있으며 특히, 보안로봇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간-로봇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 등으로 새로운 공급업체가 지속 유입되고, AI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열리고 있는 상황
 - * 물류 및 창고 관리, 매장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고객안내 및 서빙, 라스트마일 배송, 시설안전 및 보안, 제조 및 산업현장 지원, 의료·헬스케어, 마케팅·홍보 등
-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최근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도입으로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가 B2C 분야로 확장되고 높은 성장세 기록 전망('21~'30 기간 중 연평균 27% ↑, ABI Research, '23.8월)
 - 다양한 산업 현장에 맞춤형으로 제작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지 않은 분야이므로 향후 기업 운영의 필수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

적용 분야	서비스 사례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000社は 다른 업체가 개발한 진열대 운반 로봇을 인수한 후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물류창고시설에 꾸준히 도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이 주문에 맞는 물건을 찾아내서 배송 포장할 수 있도록 설계 • 한국의 000社 등 다수 업체는 '20.7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배송로봇 시범운영 (거점간 물류 배송, 고객 라스트마일 배송 등)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스타트업 000社は '19년 작물 수확 로봇을 개발하여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채나 과일 등 수확 대상 작물의 상태를 시로 판단. 주야간 작업
환경, 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000社は 비상 상황 발생시 투입하는 로봇 개발 판매 • 말레이시아 석유기업 000社は 폭발 위험 감시용 로봇 배치
매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안내, 매장 청소 및 재고 정리, 지불 결제 등의 업무 지원 (백화점, 박물관 등 다수 사례)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경로를 자율주행하면서 이상 발생시 경보 및 인적 개입 요청 (국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다수)

다. 드론

- 드론을 통해 대체하는 작업 가치는 1,270억 달러 추산(PwC, 2023.), 세계 시장은 ('22) 258억 → ('30) 848억 달러(연평균 16.1% ↑) 전망(VMR, '23.8월)
 - 인프라(물류, 방재 등), 농업, 군사 등에서 높은 가치 창출이 예상되나 국제적 규제프레임 미비, 보안사고 우려 등으로 본격 확대는 제한적
- 항공 촬영에 많은 장점이 있어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 가장 먼저 활발하게 사용 중에 있고, 최근에는 군사 분야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탑재 중량의 한계 등으로 아직까지는 정보수집*이나 저중량** 물품 배송 분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도입 중
 - * 국경감시, 조난자 수색, 농작물 또는 위험지역 모니터링 등 ** 의약품, 음식 등
 - 이동 수단(Urban Air Mobility) 활용은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적용 분야	서비스 사례
승객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스타트업 000社は 미국과 영국에서 드론택시 서비스 개시 예정으로 '24년 중 유럽 항공청 및 미국 항공국 승인 획득 추진 발표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형마트 000社は 000社와 협력하여 아칸소('21.11월), 델러스('22.4월), 텍사스('23년) 교외 지역에서 드론 배달서비스 운영 • 영국 통신업체 000社は 000社와 협력하여 스코틀랜드 및 오크니 섬 지역에서 의료용품·편지·소포 등을 배달하는 드론 서비스 운영 • 중국 000社は '21.12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음식 배달서비스 제공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000社は 드론 기반 작물재배 및 농약 살포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작업 대비 50~60배 이상 농경지에서 작업 가능
군사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는 드론 모니터링 도입으로 아부다비 항구 보안시스템 강화 • 최근 전쟁상황에서 적 탐지, 공격 등의 여러 목적으로 드론 활용
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소방방재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보호, 재난자 위치 파악 및 긴급물품 제공, 소나무 재선충 피해 방지 등 목적으로 드론 활용
영상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Geographic 등에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 하에서 각종 영상콘텐츠 제작에 활용 (예 : 아프리카 사자, 화산활동 등)

라. 웨어러블 카메라(바디캠 포함)

- 사람의 신체나 장비에 착용 또는 부착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바디캠 포함)의 세계 시장 규모는 ('23) 64억 7,000만 달러 → ('28) 135억 7,000만 달러(연평균 15.9% ↑)에 이를 것으로 전망(IDC, '23.7월)
-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개인·유튜버는 이미 필수 장비로 활용 중이며, 법 집행 기관 등은 수사·체포 등 물리적 충돌이 현저히 예상되는 상황이나 화재·재난 등 응급 상황의 기록을 저장·보존하기 위해 활용
 - 법 집행 기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바디캠을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추세가 확산(글로벌 경영컨설팅 업체 Mordor Intelligence, 2023.)
- 다른 영상기기와는 달리 피촬영자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근접하여 촬영하는 특성이 있어 안면인식을 통한 개인 식별에 활용될 우려가 높음

적용 분야	서비스 사례
공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두바이 경찰 당국은 안면인식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헬멧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000社가 개발한 이 헬멧은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적외선 카메라, 안면인식, 번호판 판독기 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영국 등에서 경찰관 직무집행시 바디캠 착용토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권력에 의한 실수 억제를 위한 취지 - 영상은 공개 원칙, 다만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은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24.1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 법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체포·구속, 현행범 수사, 붕괴 등 위험사태 발생시, 응급구호 및 구조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 - 불빛 등 촬영 사실 표시 의무화, 영상은 임의 편집이나 삭제 금지
영상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산악자전거 등 모험적인 스포츠를 즐기거나 등산, 낚시, 스키 등의 야외 활동을 즐기는 개인들이 영상 기록을 위해 널리 활용하고 있고, 특히 유튜버 등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널리 활용 중

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특성

가. 촬영 대상·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사전적 권리보장 곤란

- 기본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는 일정한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람과 사물의 영상을 자동적으로 촬영(수집)하여 디지털화된 정보로 저장하는 기계 장치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영상정보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수집)되는 결과를 초래
- 이러한 경우 '영상기기운영자'는 자신이 누구의 영상을 촬영하게 될 것인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전적 조치가 곤란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는 촬영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알림으로써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필요시 촬영범위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워 사후적 권리행사 제한

- 기술 발전으로 카메라의 크기가 점차 소형화되고, 다른 기기에 부착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착용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피촬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촬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또한 자율주행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상황이거나 드론이 높은 고도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등에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행사(열람, 처리정지 등)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는 업무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가 촬영(수집)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익명·가명처리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사후적으로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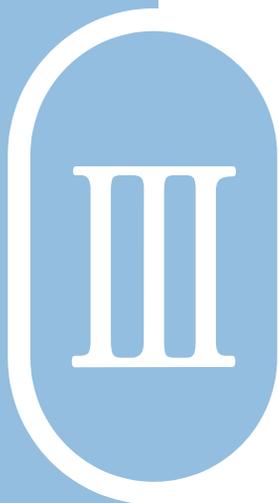
-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행동 또는 대화 내용(근접 촬영시)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촬영되는 상황이나 장소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 상존
 - ※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에 설치·운영되는 카메라는 고화질(Full HD 이상)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녹음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특히,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촬영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카메라를 은폐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행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카메라 촬영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까지 야기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는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장소나 상황에서는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과 및 방법 등을 투명하게 알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등 법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

시 사 점

- 불특정 다수에 대한 권리침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는 이미 국민의 생활 및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 특성상 영상 촬영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규제방안 모색 필요
-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 2023. 3. 14.)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한 영상 촬영 맥락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도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의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Opt-out 방식)에는 업무 목적의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영상기기운영자 등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활용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촬영 사실 표시, 처리방침 공개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적 권리행사 보장,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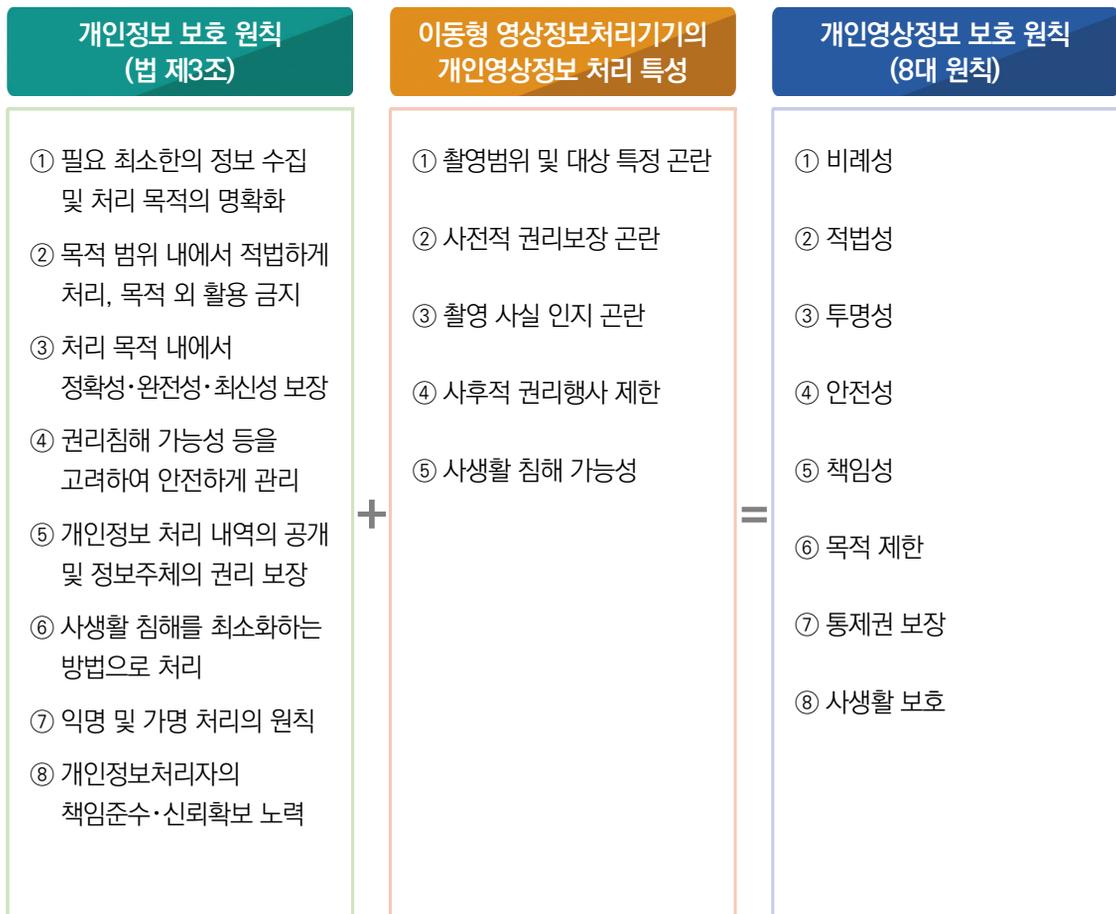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원칙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을 기본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8대 원칙을 도출

* OECD 사생활 가이드라인('80) 등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반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8대 원칙

① 비례성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② 적법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수집·이용 등) 근거는 적법·명확해야 한다.

③ 투명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④ 안전성

개인영상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⑤ 책임성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목적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한다.

⑦ 통제권 보장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⑧ 사생활 보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8대 원칙 설명

1 비례성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수집·이용 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절한 수준인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정도가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설계·제조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개념을 고려하여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방법을 적용토록 하고, 특히 제품·서비스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2 적법성

- 업무 목적의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촬영(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전체 처리 과정 또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또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3 투명성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촬영 방법이나 상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용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

※ 예시 : (드론) 불빛, 행사장 입장권·포스터, 조작자 형광색 옷차림, 홈페이지 공개 등
(로봇) 불빛, 안내스티커 부착, 주요거점 지역 안내판 설치, QR코드 활용 등
(바디캠) 불빛, 착용자 형광색 옷차림, 영상 촬영시 사전 고지 등

4 안전성

-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전체 처리과정 전반에서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준수하고, 필요시 위험도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이행
- 특히, 내부 직원 및 수탁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나 점검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

5 책임성

-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영상기기운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함

6 목적 제한

-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
-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촬영(수집)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처리 목적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목적과의 합리적 관련성, 예측가능성, 정보주체의 부당한 이익침해 가능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참조 :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7 통제권 보장

- 제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영상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권리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8 사생활 보호

-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절차 등을 설정하거나 제조사등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설계·제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화장실, 탈의실 등)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블러링 처리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IV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1. 기획 및 설계 단계
2. 촬영(수집) 단계
3. 이용 및 제공 단계
4. 보관 및 파기 단계
5. 상시 보호조치

IV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 총괄표



1 | 기획 및 설계 단계

- ❖ 개인영상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규정 또는 제품·서비스를 기획·설계시에는 관련 법적 근거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
- ❖ 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통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수정·보완

가. 법적 근거 확인

적용원칙 ② 적법성

1) 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개요

- 법 제25조의2(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2023. 9. 15.)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제1항제1호),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제1항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음
 - ※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범죄나 재난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제2항)
 - 아울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하며(제3항),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관리방침 마련, 업무위탁 절차 등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되는 조항을 준용하여야 함(제4항)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개인 식별 목적의 생체인식에 활용하는 경우는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2023. 9. 15.)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시행 2023. 9. 15)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일반 요건은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이용에 관하여도 유효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와 제조사들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등*에서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적용 사례를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여 자신이 운영 또는 기획·설계·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에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 참조(www.privacy.go.kr > 지침 > 지침자료)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023. 3. 14.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생략)

사 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적용 사례

구분	법률 조항	사례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을 통해 촬영목적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함 * 구체적 고지사항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서 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영상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법령은 법률 외에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포함(「행정기본법」 제2조제1항가목 참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상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법령 등’에는 기관별 직제, 조례 등 포함 ※ 예 : 지자체 등에서 불법주차 차량 촬영 등
제4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영상 촬영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함 ※ 예 : 광고촬영, 웨딩촬영, 배송완료 촬영 등
제5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또는 위험)과 관련하여 영상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예 : 사건사고 상황을 촬영하여 피해구제 활용 등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로서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예 : 위험지역에 대한 원격 영상 모니터링 등
제7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사항과 관련하여 영상 촬영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말함 ※ 예 : 감염병 상황을 촬영하여 긴급히 전파 등

-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3호는 각각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 여기에서,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지 아니하면 법령상 의무 준수 또는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업무상 편리하다거나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례 경찰의 드론 촬영에 대한 개인정보위 결정 사례

- ○○경찰서가 해안가 및 인근 공원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순찰을 추진한 사안에 관하여 개인정보위는 “순찰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도보 순찰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수단을 이용한 순찰업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CCTV 추가 설치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드론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 결정 [제2020-01-004호, 2020. 1.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위 사례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 방안 적용시 재평가 필요
- ○○경찰청이 인명 구조 목적의 수색과 구조 활동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사안에 관하여 개인정보위는 “수색·구조 활동은 생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데, 광범위한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수색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제2020-101-002호, 2020. 8.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인지, ②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와 제조사등이 관련 규정 또는 제품·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과 개인정보위 결정례,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 또는 제품·서비스가 법적 근거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하여야 함

판례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법원 판례

- 경찰의 촬영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843 결정)
- ○○시가 카드사업자에게 요금결제내역을 제공받아 개인택시 사업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불리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조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위반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21. 2020구합61882 판결)
- ○○지역 공무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의견제출서를 제3자인 이장에게 제공한 사건에서, 제출자의 동의를 얻거나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으므로 “법령상 의무준수나 업무수행에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8. 23. 2018고정295 판결)

3)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과 같은 유무인 이동체의 경우에는 스스로 주행(또는 비행)하는 과정에서 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분석하여 사람이나 건물 등과의 충돌을 회피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이 비의도적으로 촬영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법 제25조제1항제2호는 영상기기운영자가 정보주체의 사전적·사후적 권리행사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한 업무 목적의 촬영을 허용하는 취지를 가짐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가 법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사전적·사후적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그 밖에도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금지, 합리적 범위 이내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영상 촬영의 법적 근거로 할 수 있음

참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사전적·사후적 권리 보장의 의미

- ‘사전적 권리행사’라 함은 영상 촬영시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직접 고지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알림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촬영 거부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
- ‘사후적 권리행사’라 함은 영상 촬영 이후에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처리정지, 삭제 등 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함

- 다만, 조사·단속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영상 촬영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 의사를 수용할 수 없는 성격의 업무에 대하여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상 촬영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적용 사례(30쪽 참조)

- 예를 들어,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 또는 시설물을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 또는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 민원인 폭언·폭행 등 발생시 법 제15조제1항 적용 사례

- (공공기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로써 휴대형 영상음성기록장치, 녹음전화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 (민간기업) 폭언·폭행에 따른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한다면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을 할 수 있고 이는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이하 생략)’에 해당

4)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 규정은 향후 기술발전 등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출현을 대비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2024.8월말 현재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향후 대통령령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유형이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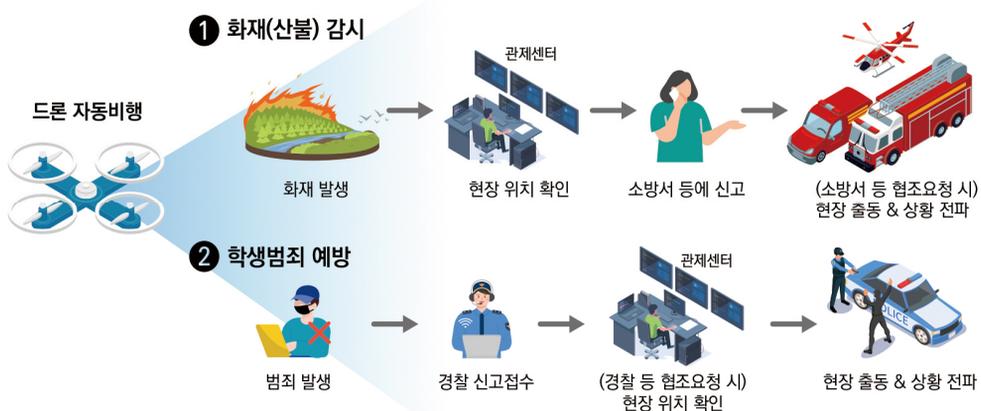
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명확화

적용원칙 ⑥ 목적 제한

-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 및 제조사등은 자신이 기획·설계하는 규정 또는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해당 규정 또는 제품·서비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참고 드론을 활용한 범죄·화재 순찰 서비스 실증 사례

- ○업체는 넓은 임야지역이 포함된 대학교를 대상으로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한 주야간 순찰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데, 해당 대학교의 학생회와 인근 주민들이 드론 영상 촬영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업체는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의 촬영 목적을 ① 범죄 발생시 대응, ② 화재 발생 감지 및 대응으로 설정한 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열화상 모드로 동작하고, 범죄 신고가 접수되거나 열화상 카메라에서 화재를 감지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 카메라 모드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3.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은 수집·이용·제공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영상기기운영자 및 제조사 등은 해당 규정의 운영이나 제품·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정의 운영 또는 제품·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다.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및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 판단

적용원칙 ① 비례성, ④ 안전성

-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촬영에 대한 예외적 허용 요건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 및 제조사들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과 관련한 규정 또는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인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시 개선하여야 함

1)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라 함은 영상 촬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내용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부당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여러 사람들이 근접하여 살아가면서 다양한 장소를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주체의 허락이나 사전 고지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 제한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당한 수준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촬영의 목적이나 수단 등 제반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및 동영상 촬영에 관한 법원 판례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425 결정)
- 아파트 부녀회장이 입주자 甲의 동영상을 촬영·전송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 ☞ 위 사례는 입주자 甲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른 입주민을 폭행하는 영상을 부녀회장이 촬영하여 아파트 관리주체 구성원인 관리소장과 동대표에게 전송한 사건임

참고 일조권 및 사생활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

- 일조권 방해, 건물간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인접한 사람들간에 상호 일정한 피해를 주는 사안의 경우에는 인구밀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일정한 수인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판단

구분	판단기준
일조방해	동지를 기준으로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미만이고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로 판단(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20560 판결 등)
건물 사생활 침해	거리를 기준으로 사생활 침해 정도를 수치화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사람의 행위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4등급* 이상 근접시 수인한도 초과로 판단(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등 다수) * 4등급은 26~34m 수준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① 촬영 목적이 정당한지, ② 그 수단이 적합한지, ③ 정보주체 권리의 성질과 내용, ④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상기기운영자는 그 판단의 이유와 근거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① 목적의 정당성

- (개념)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이하 '목적'이라 함)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목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 (판단)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관리, 인명보호,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노약자 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제품·서비스 제공, 합법적인 홍보 및 마케팅 등 정상적인 경영상 목적의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사전 조치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 (예) Clearview AI 社の 안면인식 서비스는 미국, 유럽, 영국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논란 발생
 - 다만, 오로지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을 해할 목적이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으로 볼 수 없음
 - ※ (예)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이 특정 개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② 수단의 적합성

- (개념)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수단과 방법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거나 용인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판단)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는 영상기기의 종류와 특성,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거나 용인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라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
 -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피촬영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에 의한 신기술·신제품에 의한 촬영시에도 촬영 사실 표시,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본 안내서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의도적으로 촬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의 영상기기(예 : 변형카메라) 또는 촬영 방식(예 : 불빛, 소리 등 촬영표시 제거)을 통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활용 또는 외부 공개하는 경우 등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음

③ 정보주체 권리의 성질과 내용

- (개념) 영상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정보주체 입장에서 침해받는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경미한 정도인지,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 침해 또는 스토킹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정도인지 판단
- (판단)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 사실 표시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촬영행위 그 자체로 부당한 수준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 카메라가 탑재된 기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로상에 위치한 사람을 촬영하여 보행자 회피 또는 사고발생시 대응 등의 정당한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경미한 수준의 권리침해로 볼 수 있음

- 다만, 촬영된 영상을 개인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촬영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촬영한 상황과 내용 등에 따라 인격권이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예1) 특정 개인의 행동이나 표정 등을 추적 감시,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 등

** (예2) 업무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 원본을 해당 업무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활용 등

4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수준

- (개념) 영상기기운영자가 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의 적용이나 적절한 안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지 판단

- (판단) 업계의 관행이나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처리하고 있고, 그 처리 과정에서도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이나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권리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이하 '운영관리방침' 이라 함)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개하고 있다면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 포드홀 등 도로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촬영시 보행자 얼굴 등 불필요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

-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수준은 영상기기운영자가 촬영된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과 위험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안전조치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영상기기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수정·보완이 가능함

2)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영상기기운영자가 촬영한 개인영상정보가 당해 영상기기운영자의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가 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 ① 업무 목적과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의 상당한 관련성, ②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그 개인영상정보가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당해 영상기기운영자가 개별적 업무 목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상기기운영자는 그 판단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영상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한 후 그 영상에 포함된 개인영상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지체없이 자동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라.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적용원칙 ① 비례성, ③ 투명성, ④ 안전성, ⑦ 통제권 보장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라 함)는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정책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
 - 국제적으로 PbD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PbD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
 - * A Guide to Privacy by Design(AEPD, 2019.), Privacy by Design in big data (ENISA, 2015.), Data Protection by Designing and by Default(EDPB, 2020.) 등
 - ** ISO-31700(Privacy by design for consumer goods and services)
- 개인영상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기술된 PbD의 기본원칙과 설계시 고려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소비자 또는 해당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참고 Privacy by Design의 기본원칙 * AEPD, 2016. 참조

1.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Preventative not Remedial)
 -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포함
2. 개인정보보호를 기본 설정으로(Privacy as the Default Setting)
 - 가능한 최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
3. 개인정보보호를 내재한 설계(Privacy Embedded into Design)
 - 제품·서비스 뿐만 아니라 조직의 비즈니스 관행, 프로세스 등에도 통합 적용
4. 개인정보보호와 사업기능의 균형(Full Functionality : Positive-Sum)
 - 개인정보보호와 사업기능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모두 확보하기 위해 노력
5.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보호(End-to-End Security : Full Lifecycle Protection)
 - 개인정보 생애주기(수집/이용/저장/제공/파기) 전 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보호
6. 가시성 및 투명성(Visibility and Transparency : Keep it Open)
 -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신뢰성 확보
7. 이용자 개인정보 존중(Respect for User Privacy : Keep it User-Centric)
 -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 수행

구분	Privacy by Design 설계 전략*
① 최소화(Minimize)	•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필요한 처리를 방지하여 영향을 최소화
② 은닉(Hide)	• 개인정보와 그 상호 관계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여 관찰 가능성 및 연결성 제한
③ 분리(Separate)	• 다양한 정보가 결합되어 완전한 개인의 프로필을 형성하지 않도록 가능한 분리 또는 분산 처리
④ 추상화(Abstract)	•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사항은 최대한 제한하고 가능한 높은 집계 수준에서 처리
⑤ 통지(Inform)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하여 투명성 확보
⑥ 통제(Control)	• '통지' 전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필요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현하고 제어
⑦ 집행(Enforce)	• 개인정보 처리가 법적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집행
⑧ 입증(Demonstrate)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

* 해외 PbD 관련 가이드라인 참조(APED, 2016., ENISA, 2015. 등)

- 영상기기운영자 및 제조사등은 PbD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식별된 위험과 이에 따른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후, 필요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개인정보위가 운영 중인 인증·평가제를 참조할 것을 권고

구분	법적근거	대상 및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 내용 : IT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조치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검증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공공기관(민간기업도 신청 가능) • 내용 : 일정규모 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려는 경우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	시범인증 (법제화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IT제품 • 내용 : IT제품의 개인정보 처리 기능 및 보호조치 등이 PbD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검증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 촬영(수집) 단계

- ❖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는 방법이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촬영 사실 표시, 처리방침 공개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도 업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익명·가명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논란 예방

가. 사생활 보호

적용원칙 ⑧ 사생활 보호

-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범죄·화재·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 촬영 가능(시행령 제27조 참조)
- 또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찜질방, 휴게실 등과 같은 장소는 일반적으로 촬영에 대한 거부감이 예상되거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장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목적의 영상 촬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위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피촬영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린 후 동의를 받거나, 촬영을 거부 또는 촬영 장소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가능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

판례 영상 촬영 관련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나. 촬영 사실의 표시

적용원칙 ③ 투명성

-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함
 -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기업·공공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영상기기운영자 입장에서는 영상 촬영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영상정보 처리에 기반한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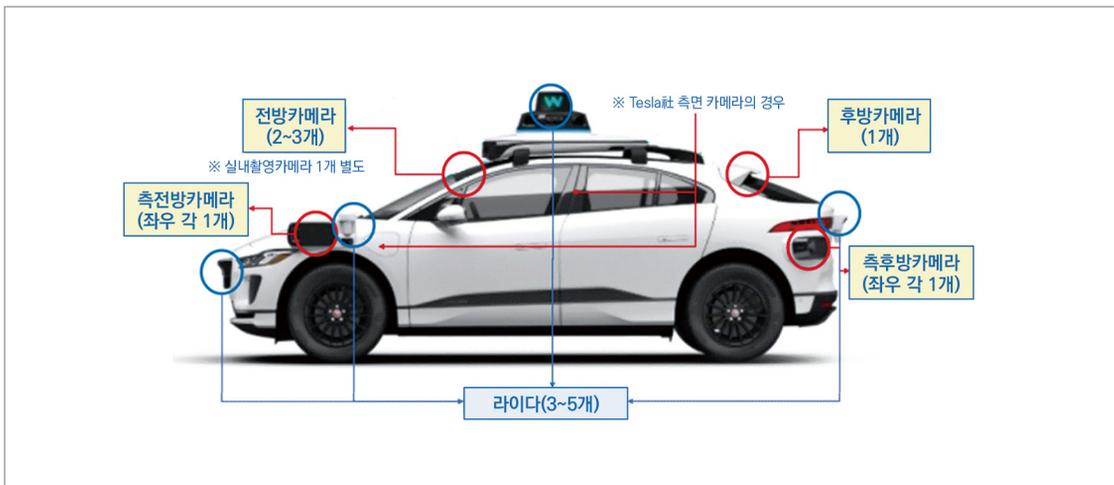
사 례 자율주행차의 촬영 사실 표시 해외 사례

- (영국) Responsible innovation in self driving vehicles (‘22.8월)
 -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나 다른 도로 사용자의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차량 외부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권고**
 - 자율주행차는 **외부에 표시용 라벨***을 부착
 - * 영국 설문 응답자의 86%가 차량이 자율주행할 경우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
- (유럽 집행위원회) Ethics of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report(‘20.6월)
 - 자율주행차 운행 시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수집에 대해 고지**하기 위해 의미 있고 **표준화된 투명성 전략* 개발**의 중요성 강조
 - *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 접근/입장/퇴장할 때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및 근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포함
 - * 문자나 시각, 청각 또는 촉각적 요소 강조

- 촬영 사실의 표시는 촬영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수 있는 정보주체에게 영상기기운영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알리는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촬영 사실 표시 후 정보주체가 영상 촬영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촬영 사실 표시만으로는 영상이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촬영되어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에 관한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기기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문자나 그림 또는 ‘운영 관리방침’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연결되는 홈페이지(QR코드 포함) 등을 병행하여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
 - ※ (예시) 회사 로고가 인쇄된 의복 착용 또는 영상기기에 회사 스티커를 부착한 후 촬영 등

- 영상기기운영자가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알렸다는 구체적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업무 수행에 따른 증빙자료 촬영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휴대 중인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 촬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한 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사실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함
- 영상기기운영자가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불빛, 소리 등 법령에 규정된 몇 가지 방법으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영상기기의 고유한 특성과 촬영을 하는 상황에 따라 가용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 이상의 방법(Multi-Channel)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드론을 통한 항공촬영의 경우에는 영상 촬영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반면에 불빛이나 소리를 통해서도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넷 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한 공지 외에도 드론 촬영 장소에 안내판을 게재하거나 드론 조작자가 관련 문구를 기재한 형광색 옷차림을 착용하는 등의 추가적 수단을 병행할 필요
 - ※ 미국, EU 등에서도 드론 촬영시 촬영 사실 공개, 사생활 보호, 권리행사 보장 등 권고
 - 다만, 너무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는 일상의 평온함을 해칠 우려가 크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문자나 그림(QR코드 포함), LED 불빛 등과 같은 수단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
- 주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개인정보위가 권고하는 촬영 사실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촬영 사실 표시 방법을 지속 보완할 예정

1) 자율주행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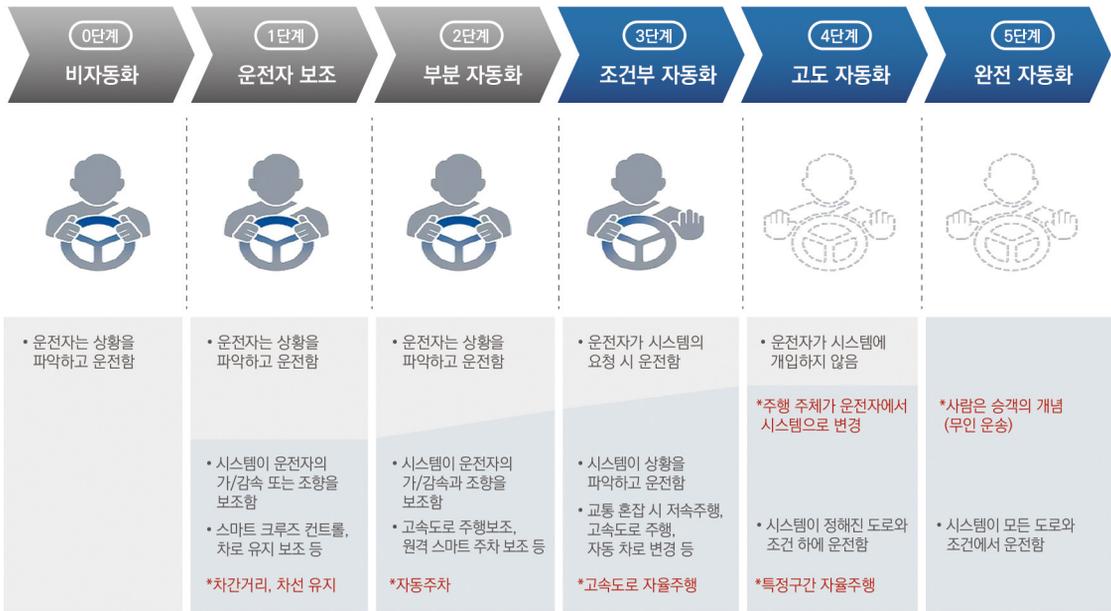


●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함

- 현재 활용되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라이다(Lidar), 레이더 등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 주행 경로상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 보행자 등의 영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어 활용되는 것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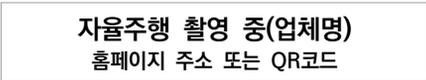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기술단계



-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고려할 때, 레벨 0~2단계에서는 자동차가 운전 활동의 일부(차간거리 및 차선 유지, 자동주차 등)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카메라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이나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 레벨 3~5단계에서는 자동차가 운전 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카메라를 통한 정보 수집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제조사는 자동차가 촬영한 영상을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여 상품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행자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
- 2024.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일반 대중에게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임시운행 또는 시범운행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안내서에 따른 촬영 사실 표시 기준과 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임시운행 또는 시범운행 자율주행차를 적용 대상으로 함
-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 일반인 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촬영 사실 표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상 촬영에 대한 운전자의 실질적인 개입 여부와 자율주행차 표지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안내할 예정
 - ※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개입없이 제조사가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여 주행에 활용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를 업무 목적의 촬영 주체로 보기 어려움
- 자율주행차는 관련 법규*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소리나 점멸등을 통한 표시보다는 문자·그림·LED 불빛 등의 시각적 요소 활용 필요
 -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자동차에는 방향지시등 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등 설치 금지

자율주행차의 촬영 사실 표시 기준 권고안

구분	주요 내용
표시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차 외부 전면 또는 양측면 * 자동차 전면에 표시할 경우 전방 주시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
표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주체(업체명)를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 생략 가능 ②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또는 해당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QR코드*(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목적과 활용 범위, 관리책임자 또는 부서 연락처, 정보주체 권리보장 내용 등이 반영된 '운영관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67~68쪽 참조)

구분	주요 내용
표시방법	<p>■ 문자로 표시하는 경우(스티커 또는 데칼 부착)</p> <p>① 내용은 가로×세로 = 5cm×15cm 내외(승용차 기준)로 차량 크기에 비례하여 적절히 조절 (예 : 대형버스의 경우 200% 이상) ※ 글자 색상은 배경과 대비하여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하되, 붉은색 등 자극적인 색상은 제외 (청색 또는 검정색 계열 권장)</p> <p>② 내용의 경우 스티커 등의 빈공간에 적절히 배치</p> <p>(예시) </p> <p>■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스티커 또는 데칼 부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또는 영상 촬영이 쉽게 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cm 내외로 함 (색상은 위와 동일) <p>(예시)  또는 </p> <p>■ 추가적 표시방법 병행(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사실을 알리는 소형 LED 불빛을 지속하여 발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방향지시등 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등은 불가)

※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별 특성(목적·용도·크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 가능

사례 자율주행차의 촬영 사실 표시 해외 사례

■ **독일 B사 시범운행 자율주행차의 촬영 사실 표시 사례**

- 차량 외관에 영상 촬영이 연상되는 그림문자와 업체명, QR코드, 촬영 목적 등을 기재한 스티커 부착
 - 촬영 목적은 자동차의 주행 보조 및 차량 편의기능 개발로 기재
(Development of driving assistance and vehicle comfort functions)
- QR코드 촬영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웹페이지 연결
 - 법적근거 : 유럽 GDPR 제6조 제1항 (f)에 다른 정당한 이익으로 명시
 - 보호조치 : 개인식별 금지, 암호화 전송·저장, 별도 IT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 권리보장 : 보행자가 녹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의제기 및 삭제요청 가능하며, 유럽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삭제권, 처리정지권, 이동 요구권 등)

- 자율주행차의 내부에 부착되어 운전자 또는 승객을 촬영하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차량이 이동 중인 상황에서도 촬영 장소와 범위가 고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아니라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 : CCTV)로 분류됨
 - 법 제25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 화재예방 또는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안내판 설치, 녹음 금지 등)이므로, 버스·택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함
 - * 「공공기관·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1.)」 참조(www.privacy.go.kr > 지침 > 지침자료)
 - 아울러, 특정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내부는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자 또는 탑승자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법 제15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반 원칙**이 적용됨
 - * 법 제15조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는 조항이므로, 자가용 승용차 등과 같이 업무 목적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
 -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9~30쪽 참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2) 서비스 로봇



- 로봇(Robot)은 다양한 작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기계장치를 말하며, 자동차 생산 공장 등에서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과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로봇’ 등으로 분류.
 - ‘서비스 로봇’은 일상생활에서 청소·오락·교육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 로봇’과 의료·건설·운송 등의 전문 분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세분화 됨
- 로봇의 경우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지정된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라이다(Lidar) 등의 정보 수집 장치를 통해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의 영상이 촬영되는 것이 불가피
 - ※ (예시1) 배달로봇은 주행 과정에서 주변 영상을 촬영하여 보행자 등과 충돌을 회피
 - (예시2) 순찰로봇은 시설물 등의 이상 상황을 촬영하여 관리주체에게 경고 알림 전송

- 특히, 로봇 운영사는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AI 모델 학습 등에 활용하여 기능 개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로봇의 경우에는 해당 로봇 이용자 또는 주변의 보행자 등에게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알려야 함
- 서비스 로봇은 사람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머무르기 때문에 촬영 사실을 표시할 경우 피촬영자가 그 내용을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음
- 또한, 외형상 친화적으로 디자인된 로봇은 사람에게 위협적인 느낌을 주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적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낮은 특성이 있음

서비스 로봇의 촬영 사실 표시 기준 권고안

구분	주요 내용
표시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외부 전면이나 후면 또는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이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표시
표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차의 경우와 동일(45~46쪽, 67~68쪽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주체(업체명 = 중복 표시 불필요) ② 홈페이지 주소 또는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QR코드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로 표시하는 경우(스티커 또는 데칼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용은 가로×세로 = 3cm×10cm 내외(배달로봇 기준)로 로봇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절히 조절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색상은 배경과 대비하여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하되, 붉은색 등 자극적인 색상은 제외(청색 또는 검정색 계열 권장) ② 내용의 경우 스티커 등의 빈공간에 적절히 배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p>(예시) 자율주행 촬영 중(업체명) 홈페이지 주소 또는 QR코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자율주행차와 동일, 45~46쪽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홈페이지 주소 또는 QR코드 </div> 또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홈페이지 주소 또는 QR코드 </div> </div> ■ 추가적 표시방법 병행(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대기장소 등 주요 거점에 안내판을 부착(X배너)하고 위 ①, ② 내용 외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추가로 안내 • 가능한 경우 촬영 사실을 알리는 소형 LED 불빛을 지속 또는 점멸하거나 안내음성을 일정한 주기로 발화

※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별 특성(목적·용도·크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 가능

사 례 국내외 자율주행 로봇의 촬영 사실 표시 사례

■ 해외 사례

- 주로 불빛(점멸 또는 지속)을 통해 로봇의 운행이나 영상 촬영 상황을 외부에 알림



〈Knightscope社 자율주행 순찰 로봇〉



〈Amazon社 자율주행 물류 로봇〉

■ 국내 사례

- 스티커, 안내판, 불빛, 소리(안내 음성)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촬영 사실 표시
 - ※ ('23.9월 이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촬영 사실 표시 등 조건으로 시범운영 실시
 - ('23.9월 이후) 법 제25조의2 시행에 따라 별도 실증특례 없이 로봇 영상 촬영 가능
 - 이 경우 촬영 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 법적 요건 준수 필요



〈안내 스티커 부착〉



〈거점 지역 안내판 설치〉



〈로봇 전면에 불빛 표시〉



〈안내 스티커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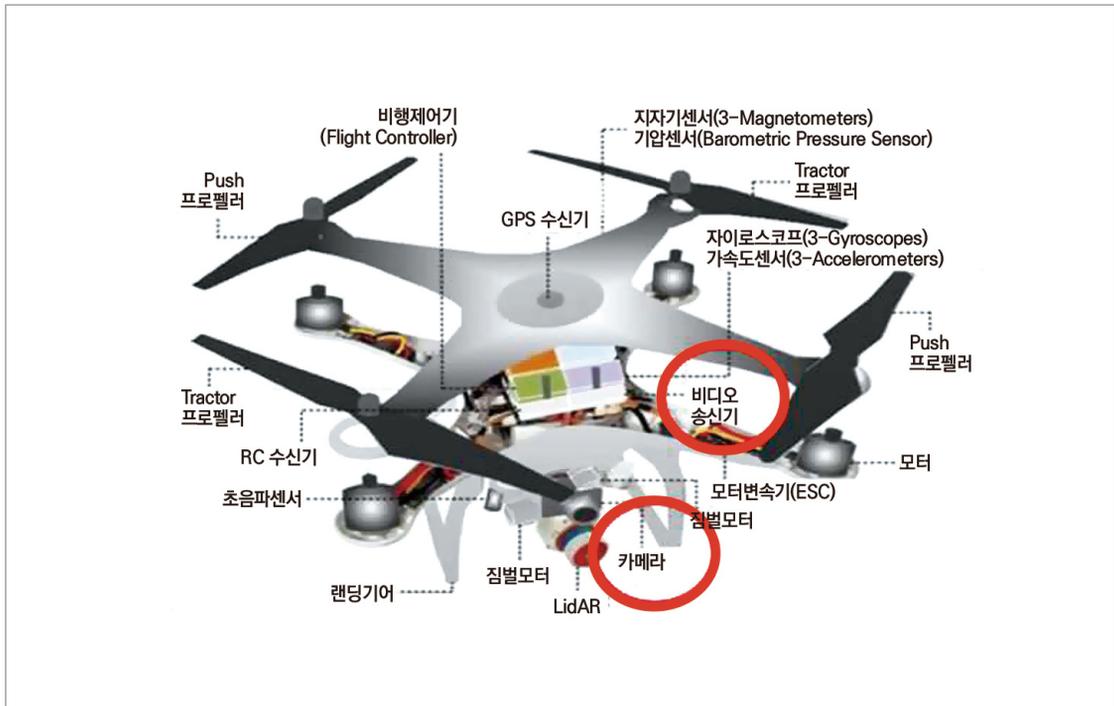


〈거점 지역 안내판 설치〉



〈로봇 후면에 안내표지〉

3) 드론



- 드론(Drone)은 통상적으로 지상에 있는 파일럿(drone pilot)이 무선으로 조종하거나 사전에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말함
 - 최근에는 선박 형태의 해상용 드론도 개발·운영되고 있어 ‘항공드론’과 ‘해상드론’을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해상드론’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이 촬영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 안내서에서는 주로 ‘항공드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함
- 드론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고도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영상을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감시, 재난 피해자 수색, 응급 구조 등에 많은 장점이 있음
 - 반면, 지상에서는 보통 드론의 존재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주체는 드론에 의하여 자신의 영상이 촬영되어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는 예측할 수 없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등과 같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선진국에서도 드론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촬영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촬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데이터 최소화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참고 드론 영상 촬영 관련 해외 가이드라인 사례

미국

■ 근접 드론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16.5월)

* Guidelines for Neighborly Drone Use

- 상무부 산하 NTIA 주도로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관계 정부기관이 공동 발표
- 드론 이용자의 권리와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간 균형 유지 목적

〈참고〉 주요내용 요약

- 가능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촬영 사실을 알릴 것
-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침해하지 않을 것
- 만약 피할 수 있다면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비행하지 않을 것
- 아무 이유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하지 말 것
-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삭제해 줄 것
- 사생활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

유럽

■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15.1월)

*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 EU집행위 산하 GDPR 작업반에서 발표(동 작업반은 '18.5월 EDPB로 확대)
- 드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한 지침 제공 목적

〈참고〉 주요내용 요약

- 드론의 경우에는 탑재된 개인정보 처리 장치의 종류, 수집 목적 및 주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정당한 행사가 제한될 우려
- 위와 같은 문제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 준수 필요
 - 처리의 적법성과 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투명성(정보주체 통지 또는 표지)등
-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통지 방식 고려
 - 이벤트 표지판, 입장권, 소셜미디어, 무선신호, 섬광등, 버저, 드론 조작자 옷차림 등
 - EU(작업반)가 권고하는 방침은 드론 조작자가 웹사이트나 관련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여 드론 사용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시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 삭제하거나 익명처리 권고

- 드론을 통한 항공촬영의 경우에는 촬영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불빛이나 소리 등을 통해서도 촬영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고 드론 자체에 안내문구를 기재하거나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지상에서 그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지역을 촬영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등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
- ※ 법 제25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드론의 촬영 사실 표시 기준 권고안

구분	주요 내용
표시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위가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기업·공공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 ■ 드론 운영상황에 따라 촬영표시 가능한 곳에 추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67~68쪽 참조) * 아래 '추가적 표시방법 병행(권고)' 참조
표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기기운영자(촬영주체를 말함), 촬영 목적, 지역, 기간, 관리책임자 연락처(이메일을 말함), 수탁업체명(업무 위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위 운영 인터넷사이트 '촬영지역 공지' 내용 참조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기업·공공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 페이지로 이동 • 본인 확인 후 관련 서식에 따라 촬영사실 공지 신청 • 신청 완료 후 '촬영지역 조회'를 통해 공지 상태 확인 ■ 추가적 표시방법 병행(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경로를 지속 운행하는 경우(시설물 점검, 산불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이착륙장 등 주요거점에 안내판 또는 X배너 설치, • 야외 행사 또는 이벤트시 : 안내서면(입장권 또는 포스터 등에 기재) 배포 또는 안내방송 등 • 기타 공개된 장소 촬영시 : 드론 조작자가 '드론 촬영 중' 문구가 기재된 의복 착용, 촬영시 소형 LED볼빛 표시 등

※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별 특성(목적·용도·크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 가능

- 드론은 고도나 장벽 등의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촬영 대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피촬영자 모르게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더 높은 기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업무 목적으로 드론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 특히, 공공기관이 조사·단속 등과 같은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상 촬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추고 소관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범위에서 활용해야 함

*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설명 및 법령 해석 사례(31~32쪽 참조)

판례 드론 촬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

-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촬영행위는 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수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9조) 경찰은 집회·시위현장에서 범죄가 발생 할 때에는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할 수 있다”면서도,
- “경찰의 촬영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참가자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843 결정)

4) 바디캠



- 바디캠(Body Worn Camera)은 일종의 자동차 블랙박스과 같이 사람의 몸에 부착하여 주변 상황을 기록하는 소형 영상녹화장치를 말하며,
 - 사람의 몸에 부착한다는 측면에서 ‘웨어러블 카메라’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거나 카메라를 부착한 사람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액션캠’으로 불리기도 함
 - * 웨어러블 카메라는 바디캠뿐만 아니라 안경, 목걸이, 시계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
- 바디캠이 업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위험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업무 또는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제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 익스트림 스포츠 또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개인들도 기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바디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같은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촬영은 법 제25조의2 조항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

- 바디캠을 이용한 영상 촬영은 촬영자와 피촬영자가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식별성이 매우 높은 영상이 촬영되고 상호간의 대화 내용까지 녹음될 수 있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바디캠을 통해 업무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려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문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이 조사·단속 등의 법 집행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자가 피촬영자에게 촬영 사실과 목적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급적 피촬영자의 허락 하에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긴급한 상황 발생 등으로 피촬영자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피촬영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등에서는 사후적으로라도 촬영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도 바디캠은 경찰의 법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잉 진압이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 억제를 위하여 직무집행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 우리나라도 '24.1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라 피의자 체포, 현행범 수사,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 응급구호 등의 경찰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 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바디캠의 촬영 사실 표시 기준 권고안

구분	주요 내용
표시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디캠 본체(불빛 또는 소리) ■ 바디캠 운영자의 복장(안내문구 표시) ■ 피촬영자에게 구두로 직접 고지(피촬영자가 특정된 경우)
표시내용	<p>①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 주체 * 촬영주체(업체명)를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 생략 가능</p> <p>②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또는 해당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QR코드*(권장) * 관리책임자 또는 부서 연락처, 촬영 목적과 활용 범위, 정보주체 권리보장 내용 등이 반영된 '운영관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링크</p>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디캠 본체를 통해 표시하는 경우(① 내용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중임을 알 수 있는 LED 불빛 표시(지속 또는 점멸등) • 바디캠 본체 또는 촬영자 복장에 촬영주체를 알 수 있는 명칭이나 그림(로고, 마크 등) 표시 ■ 바디캠 운영자의 복장을 통해 표시하는 경우(① 내용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사실과 촬영 주체를 알 수 있는 정보(문구, 그림 등) 표시 * (예) 경찰이 정복 착용하고 촬영시 촬영주체를 쉽게 알수 있음 ■ 피촬영자에게 구두로 직접 고지하는 경우(① 내용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촬영자가 특정된 경우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 주체를 구두로 직접 고지한 후 촬영 ■ 추가적 표시방법 병행(권고)(① 및 ②내용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영상 촬영이 예정된 경우에는 안내판, 안내서면 등을 통해 촬영 사실 안내

※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별 특성(목적·용도·크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 가능

다. 가능한 한 익명·가명처리

적용원칙 ④ 안전성, ⑤ 책임성

-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가 익명 또는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도 업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익명 또는 가명처리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 (예시) 산불감시, 교통흐름 확인 목적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 례 익명·가명처리 영상 사례

영상 원본(개인정보)



- ▶ (정의)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개인정보에 해당
- ▶ (처리기준) 촬영(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시 보호법 준수 필요

가명처리된 영상(가명정보)



- ▶ (정의)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영상. 개인정보에 해당
 - * 결합 가능한 원본 또는 추가정보(특정인과 연결 가능한 숫자, 기호, 위치정보, 원본복원 기술 등)가 있는 경우는 가명정보에 해당
- ▶ (처리기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 보호법상 안전조치 준수 필요

익명처리된 영상(익명정보)



- ▶ (정의)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시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서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아님
 - * 결합 가능한 원본이나 추가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충분한 경우에 한함
- ▶ (처리기준) 별도의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위 그림은 익명·가명처리 영상의 단순 예시이며, 익명·가명처리의 기준이 아님

라. 정보주체의 촬영 거부 의사 존중

적용원칙 ⑦ 통제권 보장, ⑧ 사생활 보호

-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정보주체가 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으므로, 영상기기운영자가 업무 목적의 영상 촬영시 정보주체가 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촬영 중단이나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예시) 관광지 홍보 촬영 중 일부 관광객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 중단 및 해당 영상 삭제

- 그러나, 동 규정은 정보주체에게 영상 촬영을 사전에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화한 조항이므로 일종의 Opt-out 방식*과 같이 기본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 표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함

* (Opt-in)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이메일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식

(Opt-out)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한해 중단하는 방식

- 바디캠,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와 같이 영상기기운영자(촬영자)와 정보주체(피촬영자)가 근접한 상황에서는 정보주체가 촬영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직접 표시하여 촬영 배제 등을 조치할 수 있으나 자율주행차 등이 고속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의 거부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 긴급히 주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 또한, 자율주행차 등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행 경로상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형상과 촬영된 장소 및 시간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자율주행차 등을 운영하는 영상기기운영자는 주행 완료 후 업무상 꼭 필요한 영상을 제외하고는 삭제(사건·사고 영상 등은 제외)토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 함으로서 정보주체가 열람이나 삭제 등의 권리행사를 제기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3 | 이용 및 제공 단계

- ❖ 당초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추가적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목적과의 관련성과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
- ❖ 제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AI 학습 등 과학적 연구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필요

가. 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적용원칙 ⑤ 책임성, ⑥ 목적 제한

- 법 제25조의2는 영상기기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업무를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등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 따라서, 개인영상정보는 그 촬영(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법 제15조제1항, 법 제17조제1항), 그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나 정보주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영상*은 영상기기운영자가 임의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법 제15조제1항제4호)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 제한
-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목적에 관계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음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8제1항을 추가로 적용
 - ※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약 또는 국제협정 등

☞ 당초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추가 이용·제공 및 익명·가명처리된 개인영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본 안내서 59~64쪽에서 별도 설명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2023. 9. 15.)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추가적 이용·제공

적용원칙 ⑤ 책임성, ⑥ 목적 제한

- 영상기기운영자는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당초에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음
 - 개인영상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기준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영상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안전한 주행을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교통사고 또는 고의적인 파손 등의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해당 상황 처리와 관련없는 개인영상정보는 익명·가명처리하거나 비인가자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이용·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반면,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시범운행 중인 자동차 또는 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별도로 저장한 후 개인 식별 가능한 상태로 AI 학습 등에 활용하는 경우는 당초 수집 목적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 영상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이 개인 식별 가능한 상태로 AI 학습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영상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 등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 94-96쪽, 113쪽 참조

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활용

적용원칙 ④ 안전성, ⑤ 책임성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나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후 활용(이용, 제공 포함)할 수 있음

- 여기에서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말하므로 AI 기술 개발 및 AI 알고리즘 학습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AI 학습 또는 기술개발 등의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가명처리하여야 함
 - 법 제58조의2에 따른 익명정보(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서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없이 활용 가능
- 가명처리된 정보('가명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추가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영상기기운영자가 가명정보를 AI 기술개발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와 결합 가능한 추가 정보를 별도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29조의5)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 특히, 영상기기운영자가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함
 - ※ 가명처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활용 범위,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사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2.)」 참조
-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등)된 영상데이터를 자율주행 AI 등의 연구개발에 활용할 경우, 보행자 인식을 저하* 등으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 원본 영상 활용시 가명처리 영상에 비하여 0.8~17.6% 정도 평균 정밀도 개선 가능
(출처 : "Does Image Anonymization Impact Computer Vision Training?"(IEEE, 2023.))
 -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안전조치 준수 및 주기적 점검 등을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www.sandbox.go.kr 참조)
 - ** '24.6월말 기준 자율주행차, 로봇 관련 4개 업체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중

1. 기본원칙

- 영상데이터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당초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익명·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영상데이터 원본은 실증특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하며 개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등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경우는 별론으로 함

2.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 및 이행

- 아래 내용이 포함된 영상데이터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담당조직 구성 및 역할·책임 지정(관리책임자, 보안운영 인력 등)
 - 연구 목적 외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외부 공개 포함) 명확화
 - 영상데이터 활용 목적과 기준, 세부 운영 절차 등 문서화
 - 영상데이터 처리 단계별(생성, 보관, 활용, 폐기 등) 현황 관리체계 마련
 - 비인가자 출입 통제 및 외부 침입자 발생시 대응 방안 마련
 - 외주 용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용역사 및 용역인력 관리 등)

3. 영상데이터의 보호 및 관리(외주업체 포함)

- 영상데이터 원본은 외부망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이하 '분리공간')*에서 처리하고, 그 외 장소에서는 가명처리된 상태의 영상데이터를 처리
* 논리적 망분리가 적용된 경우 국내에 위치한 IDC, 클라우드 저장소 등도 포함 가능
- 영상데이터 원본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저장매체 포함) 및 전송 암호화 적용
- 분리공간 출입문 CCTV 설치, 출입자 인증(카드인식, 생체인식 등) 및 출입기록 보관, 카메라 및 비인가 저장매체 반입 금지 등 인적·물적 통제
-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개인별로 설정하고 처리내역 보관
- 출입 가능 인력을 수시로 업데이트(퇴직, 이직 등)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 영상데이터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처리 및 반출 시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샘플영상 반출시 등)

4. 외주인력 보안대책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절차 준수
 - ※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손해배상 책임 등 문서화
- 외주인력 참여시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용역 종료시 영상 데이터 회수 및 폐기 확인
- 외주업체별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역할·책임 부여
- 외주업체 인력 중 영상데이터 접근 가능자 명단 관리 및 현행화

5.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실시

- 분리공간내 출입내역 및 영상데이터 원본 처리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 확인(분기 1회 이상)
- 영상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임직원 및 외주인력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실증사업 착수 또는 신규 인력 채용시, 이후 반기 1회 이상)

6.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증특례 조건으로 부과하는 안전조치 등 조치사항을 성실히 준수·이행하고, 실증사업 시행 전·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실사, 중간 점검, 사후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할 것
- 개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하며, 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 및 합리적 범위 초과 금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위 기준은 연구개발의 목적과 영상의 처리 방법 등에 따라 사안별로 수정·보완 가능

라. 처리 위탁

적용원칙 ② 적법성, ⑤ 책임성

- 영상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 및 표준지침 제43조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영상기기운영자는 운영관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반영하여 공개(홈페이지 게재 등)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함
- 또한,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영상기기운영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영상기기운영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참고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다만,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해당 수탁자를 영상기기운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영상기기운영자는 수탁자의 과실에 의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수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탁자의 경우에도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책임이 준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자세한 위·수탁 절차 및 수탁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 203~212쪽 참조

4 | 보관 및 파기 단계

- ❖ 영상기기운영자는 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1회적 이용을 위해 수집한 정보 등 보관이 불필요한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익명 처리 포함)
- ❖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호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 위탁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가. 보호책임자 지정 등 운영관리체계 마련

적용원칙 ④ 안전성, ⑤ 책임성

- 영상기기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처리 실태조사 및 개선, 내부직원 및 수탁자 대상 교육계획 수립 등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와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영상기기운영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거나, 당해 업무만을 담당할 별도의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참조)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나. 보유기간 설정 및 관리

적용원칙 ⑤ 책임성, ⑥ 목적 제한

- 영상기기운영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직접 촬영 또는 제공받은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한 보유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영상정보의 경우에는 당초 수집 당시부터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할 수 있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촬영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보유기간의 설정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시점이나 조건(예 : 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사업 종료시까지)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가급적 구체적 기간(예 : 영상 촬영 후 1년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영상기기운영자가 설정한 보유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파기하여야 하나, 업무 목적 미달성 등 추가로 보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과 그 판단의 근거 등을 운영관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
- 다만, 「교통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영상을 의무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규정이 우선 적용됨

참 고 「교통안전법」에 따른 영상 보존기간

-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자동차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자료·통계 또는 정보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의무보관(「교통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자료의 멸실·손상에 대비하여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적용원칙 ③ 투명성, ⑤ 책임성

- 영상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 및 표준지침 제39조의3에 따라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운영관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한 경우에는 운영관리방침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관리방침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참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기재사항(표준지침 제39조의3 참조)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거나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 운영관리방침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 발생시 영상기기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안 유지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권장

사례 운영관리방침 관련 해외 사례

- 독일 니더작센주 데이터보호 위원회(LfD)는 V 자동차 회사에 110만 유로 벌금 부과
 - 2019년, V 자동차 회사의 테스트 차량은 주행 시스템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차량 주변의 교통상황을 촬영하여 기록
 - 이에 독일 니더작센주의 데이터보호 위원회는 동 테스트 차량에 보행자 등을 위한 표지가 누락되어 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 미체결 등을 이유로 1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 로봇 등은 기기의 디자인이나 크기 등으로 인해 촬영 중임을 알리는 간단한 안내 문구나 그림 문자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관리방침에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또는 QR 코드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42~54쪽 참조)
 - 운영관리방침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와 운영 목적,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에 따른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영상기기운영자가 정보주체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 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관련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2023. 9. 15.)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 고시 제2024-1호, 2024. 1. 4., 일부 개정)

제39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적용원칙 ④ 안전성, ⑤ 책임성

- 영상기기운영자는 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
 - * 다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포함)에서 별도의 보존의무를 규정한 경우를 말함(예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방사선 사진 등은 5년 보관)
- 보유기간 도래가 임박하더라도 영상기기운영자가 처리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추가로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보유기간을 연장한 근거와 새로 책정된 보유기간을 공개한 후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영상기기운영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목적과 보유·이용기간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변경하려는 보유기간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완전 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한 삭제, 복원되지 아니하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그러나, 위에 언급된 조치들은 개인영상정보 전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구분	조치사항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의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기술적 특성으로 파기 곤란한 경우	익명정보로 처리하고 복원 불가능하도록 조치

5 | 상시 보호조치

- ❖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또한, 내부 직원 또는 수탁 직원에 의한 오남용 예방을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식제고 노력 필요

가.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원칙 ④ 안전성, ⑤ 책임성

- 법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영상기기운영자는 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아래 표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항목을 정리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일부개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주요 항목

기술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 통제• 개인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변조 방지•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출력, 복사시 안전조치
관리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 권한의 관리
물리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보조 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개인정보위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일부개정)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 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나.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적용원칙 ④ 안전성, ⑤ 책임성

- 영상기기운영자는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함)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 * 영상기기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함
 - 영상기기운영자가 보호책임자(65쪽 참조)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경우에는 당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 특히, 외부 위탁사에 의해 개인영상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영상기기운영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어렵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주의 필요
 - 업무 위탁시 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 현황 점검 및 감독, 위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문서화
 - 위탁자에 대한 교육 방법과 횟수 등은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위·수탁 업무의 성격,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 개인정보 처리자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대위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위탁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다만, 위탁자에게 사용자책임 발생시에도 그 내용에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

☞ 개인영상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수탁 방법과 절차, 서식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2020.12.)」 참조(www.privacy.go.kr) 자료 > 지침자료

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마련 및 이행

적용원칙 ③ 투명성, ⑦ 통제권 보장

-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권(제35조), 전송 요구권(제35조의2), 정정·삭제 요구권(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자동화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설명요구권(제37조의2)이 대상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의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운영관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다만, 정보주체가 영상기기운영자에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등을 연기하거나 거절·제한할 수 있음.

정보주체의 권리	연기 또는 거절·제한 가능한 사유
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징수, 성적 평가, 시험 및 자격심사, 조사·감사 등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송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 • 법률에서 전송 요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설명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 • 거부 또는 설명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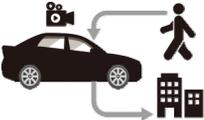




개인영상정보 처리 유형별 시나리오



개인영상정보 처리 유형별 시나리오

<p>유형 1 : 저위험</p> 	<p>◆ 영상기기내 처리(전송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기기 자체에서 촬영과 처리(분석, 활용 등)가 모두 이루어지고 외부에는 전송되지 않는 유형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자동차의 블랙박스, 주차보조 및 차선유지 장치, 비디오키메라를 통한 촬영 및 저장 등 이 유형은 업무 목적의 촬영이 아닌 경우(블랙박스 등)가 대부분이고, 업무 목적인 경우에도 위험성 낮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용자에게 의해 통제 가능한 경우에 한함 촬영된 영상을 USB 저장 또는 Wi-Fi 접속 등을 통해 외부에 전송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형2>에 해당
<p>유형 2 : 위험</p> 	<p>◆ 운영자가 외부에서 처리(전송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기기는 주로 촬영과 전송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처리(저장, 분석, 활용 등)는 외부에 있는 영상기기운영자가 담당하는 유형을 말하며, 일정 수준의 위험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순찰 또는 배달로봇 등을 원격으로 관제, 자율주행차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연구개발에 활용 등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한 결과를 해당 영상기기 또는 제3자에게 보내는 경우는 <유형3>에 해당
<p>유형 3 : 위험</p> 	<p>◆ 외부 처리 후 제3자 제공(전송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2>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실질적인 처리는 외부에 있는 영상기기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촬영된 영상이나 처리결과가 당해 영상기기 외 제3자(3rd Party)에게도 전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V2X 기술을 통해 인근 차량간 정보를 공유하는 커넥티드카, 교통사고 발생 감지시 구난기관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자동차 등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이 유형의 영상기기가 증가할 전망



[사례A]

자동차 위험상황 발생을 감지하고 영상 저장 및 알림을 보내는 영상기기

제품·서비스 개요

- (기능 설명) 자동차가 주행 중이거나 주차 중인 상황에서 차량 주변을 지속적으로 촬영 및 저장하여 위험상황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
 - 촬영된 영상은 자동차에 저장(최대 10일), 단 위험상황(충돌, 손괴 등)을 감지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알림을 보낸 후 확인시까지 저장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과 방법

- (처리 목적) 교통사고 등 위험상황 예방 및 증거자료 확보
- (처리 방법) 촬영된 영상은 자동차에 저장되어 일정기간 경과후 삭제되며, 차량 소유자는 사고처리에 필요한 경우 USB를 연결하여 다운로드 가능
 - 주차 중 위험상황을 감지한 경우 차량 소유자 탑승시 자동 알림 표시

예상되는 위험성 평가

- 보행자 등은 자신의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기 어려움
-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누구나 USB를 통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집과 직장의 위치, 가족 등의 영상이 손쉽게 유출될 수 있음

개선방안 도출

-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등 위험상황 예방 및 증거자료 확보는 운전자의 본질적 업무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사적 활동의 일환으로 추정)
 - ※ 단,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업무 목적으로 활용시에는 그러하지 않음
-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소형 LED 불빛이나 그림 표시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 (제조사에 의한 기본설정 필요)
 - 특히, USB로 영상을 다운받는 경우 비밀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정당한 소유주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



[사례B]

사용자 식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가전(TV, 에어컨 등)

제품·서비스 개요

- (기능 설명)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얼굴 영상, 음성 등)를 사전 등록한 경우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고, 해당 사용자가 선호하는 채널 업데이트 알림, 온도 조절 및 공기정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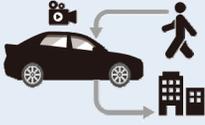
- (처리 목적) 사용자 식별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처리 방법)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는 스마트 가전 내부에 저장(사용자가 스마트 가전 통합관리 앱을 통해 정보를 직접 등록·관리하는 경우 포함)
 - 다만, 사용자 서비스 내용 중 별도의 요금 지불이 필요한 사항 등은 외부 전송 후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이 경우, 유형3에 해당)

예상되는 위험성 평가

-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 중에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성적 취향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있음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개인별 서비스 이용 내용과 개인별 취향 등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음

개선방안 도출

- 원칙적으로 가정 생활 영위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업무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 제조사는 스마트 가전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알리고 사용자 본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사용자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보 처리는 최대한 지양하고 유출시 피해 예방을 위한 개인별 비밀번호 설정 알림 및 저장된 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사례C]

외부 원격관제를 통해 운영되는 서비스 로봇(배달, 안내, 순찰 등)

제품·서비스 개요

- (기능 설명) 서비스 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원격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경로 이탈, 로봇 파손 등) 발생시 대응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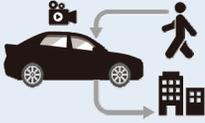
- (처리 목적) 서비스 로봇의 운영 및 이상 상황 발생시 대응
- (처리 방법) 로봇이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되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주행 영상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간 저장 후 삭제
 - 단, 배달 완료에 대한 증빙 영상(분쟁 발생시 필요) 및 사건사고 영상(사고 처리시 필요) 등은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 가능

예상되는 위험성 평가

- 보행자 등은 자신의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특히 누군가에게 원격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사실에 거부감
- 서비스 로봇은 사람과 근접하여 저속 운행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 촬영될 가능성이 높음

개선방안 도출

- 본 안내서의 '영상기기운영자'에 해당하므로 촬영 사실 표시, 운영관리방침 마련,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원격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타인간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촬영 중단 필요
- 영상 전송시에는 유출 예방을 위해 암호화된 경로를 이용하고, 보관중인 영상에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사례D]

촬영된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시범운영 자율주행차

제품·서비스 개요

- (기능 설명)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라이다(Lidar), 센서 등을 통해 주행 경로상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AI 학습 등 연구개발에 활용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과 방법

- (처리 목적) 자율주행 AI 학습 및 기능 고도화
- (처리 방법) 주행 경로상에서 촬영된 영상은 자동차 내부에 저장되며, 주행이 완료된 이후에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 전송
 - 업무망과 별도 분리된 IT시스템에 보관되어 담당자 외 접근 불가
 - 활용 가치가 낮은 영상은 삭제(단, 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예상되는 위험성 평가

- 보행자 등은 자신의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원본을 지속 보관하면서 AI 학습 등에 활용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우려

개선방안 도출

- 본 안내서의 '영상기기운영자'에 해당하므로 촬영 사실 표시, 운영관리방침 마련,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촬영된 영상을 AI개발에 활용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원칙. 단, 연구 목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실증특례 신청 가능(61~63쪽 참조)
- 영상 전송시에는 유출 예방을 위해 암호화된 경로를 이용하고, 보관중인 영상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통제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유형 3 : 위험

외부 처리 후 제3자 제공(전송○)



[사례E]

V2X* 기술을 활용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 Vehicle-to-Everything : 차량과 각종 사물(차량, 신호등 등)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

** Connected Car : V2X 통신을 통해 차량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

제품·서비스 개요

- (기능 설명)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보행자의 스마트기기, CCTV, 신호등 등의 각종 교통 인프라로부터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주변 교통상황이나 장애물의 존재 여부 등 자동차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과 방법

- (처리 목적)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자율주행 구현
- (처리 방법) 각종 교통 인프라로부터 수집된 정보(영상, 문자 등)는 중앙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전송되며, 분석 결과는 각각의 교통 인프라와 공유
 - 공유되는 정보는 날짜/시간, 객체의 종류(자동차, 보행차, 이륜차 등), 객체식별부호(임의 부여), 객체별 위치·속도·방향 등

예상되는 위험성 평가

- 교통 인프라간 공유되는 정보에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의 위치와 집 주소, 도로 주행과정에서 각종 교통신호 또는 속도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음

개선방안 도출

- 커넥티드카 제조사는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어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동차 구매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함
- 교통 인프라간 공유되는 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 필요

유형 3 : 위험

외부 처리 후 제3자 제공(전송○)



[사례F]

교통사고 또는 도난 감지시 자동으로 신고하는 자동차

제품·서비스 개요

- (기능 설명)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동차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 또는 소유자가 미리 지정한 곳에 자동으로 정보 제공
- ※ 유럽은 '18년부터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감지한 경우 운전자 조작없이 긴급구조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e-call 장치를 의무화(미국, 일본 등에도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 지원)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과 방법

- (처리 목적) 교통사고 피해 예방 및 도난 차량 회수 지원
- (처리 방법) 자동차가 일정 수준 이상의 충돌이나 사고를 감지한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차량의 위치와 소유주, 충돌 전후 영상 등을 전송하고, 자동차 도난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지정한 연락처에 차량의 위치와 실내외 영상 등을 전송

예상되는 위험성 평가

- 교통사고 영상은 피해자 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영상이지만, 외부에 유출되거나 언론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경우 해당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개선방안 도출

-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송된 영상은 당해 구조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언론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필요
- 자동차 제조사는 소유주에게 해당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가능한 긴급 연락의 범위와 연락처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VI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1. 영상기기운영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안내
2. 제품·서비스 개발자 또는 제조사를 위한 안내
3. 사적 목적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1 | 영상기기운영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안내

-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
 - *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즈니스 정보의 약 80~90%가 비정형 데이터(메릴린치, 1998.)
 - (정형데이터) 사전에 정의된 형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예 : 엑셀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 (비정형데이터) 특정한 형식이 없는 다양한 데이터(예 : 동영상, 사진, 음성, 보고서 등)
- 이에 개인정보위는 산업 전반의 비정형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를 고려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24.2.2.)한 바 있으며
 - 최근에는 온라인에 공개된 다양한 정보를 AI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4.7.)」를 발표 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영상기기운영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가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장벽이 아니라 사업자가 어떠한 보호조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이슈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 제품·서비스 개발자 또는 제조사를 위한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 포함)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영상기기운영자 포함)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 동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법적 책임과 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며, 관련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자는 직접적인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제품·서비스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수준은 당초 개발자 또는 제조사가 설정한 내용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 한번 설정된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또는 제조사 등의 역할이 중요
- 따라서, 개발자 또는 제조사는 제품·서비스의 기획·설계·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기본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특히,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가능한 경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
 - ※ (예시) 제품 포장 등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구를 반영하고, 설명서를 통해 자세히 안내

3 | 사적 목적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 가정생활 또는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음
- 그러나, 아무리 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적인 공간(주거지, 사유지 등)이나 민감한 신체 노출이 있는 장소(화장실, 탈의실 등)의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 특히,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 * (예시) 다른 사람의 얼굴 등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 ※ 유튜브(www.youtube.com)의 경우 동영상 게재시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능을 무료로 제공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VII

안내서의 활용



안내서의 활용

- 본 안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는 영상기기운영자와 제조사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단계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고,
 - 이후 제품 및 서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촬영,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이나 개별 기업에서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교재로도 활용 가능
- 본 안내서에서 제시한 조치사항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 영상기기운영자 및 제조사등은 자신의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칠수 있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권장
- 본 안내서와 관련한 상담과 개인정보보호 법령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go.kr, 국번없이 ☎118)로 문의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사항과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부 록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2.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

부록 1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1 | 기획 및 설계 단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참조(27~40쪽)

- 개인영상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규정 또는 제품·서비스를 기획·설계 시에 관련 법적 근거와 목적달성에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
- 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를 통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수정·보완

[YES·NO·미해당]

확인1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2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명확한지? ▶ 영상기기운영자 및 제조사등은 자신이 기획·설계하는 규정 또는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3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는지? * (Privacy by Design) 제품·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4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지?(공공 : 의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 촬영(수집) 단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참조(41~56쪽)

-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는 방법이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촬영 사실 표시, 처리방침 공개 등 필요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도 업무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익명·가명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논란 예방

[YES·NO·미해당]

확인1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2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운행경로 주변에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함 ※ 촬영 방법의 특성(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www.privacy.go.kr)에 공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3 익명 또는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도 업무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익명·가명처리하고 있는지? * (예시) 산불감시, 교통흐름 확인 목적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4 정보주체의 촬영 거부 시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는지? ▶ 영상기기운영자는 주행 완료 후 업무상 꼭 필요한 영상을 제외하고는 삭제하고,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 ※ (Opt-in)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이메일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식 (Opt-out)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한해 중단하는 방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 이용 및 제공 단계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참조(57~64쪽)

- 개인정보정보를 촬영(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추가적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목적과의 관련성과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
- 제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촬영한 개인정보정보를 AI 학습 등 과학적 연구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필요

[YES·NO·미해당]

확인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고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2 개인정보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3 개인정보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AI 학습 등 연구개발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처리하고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4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문서화하고 있는지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 보관 및 파기 단계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참조(65~69쪽)

- 영상기기운영자는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개인정보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1회적 이용을 위해 수집한 정보 등 보관이 불필요한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익명처리 포함)
-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정보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호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 위탁을 통해 개인정보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필요

[YES·NO·미해당]

확인1 보호책임자 지정 등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 <참조> 개인정보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보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2 개인정보정보를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한 보유기간을 설정하였는지? ▶ 가급적 구체적 기간(예 : 영상 촬영 후 1년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 <참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기재사항(표준지침 제39조의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4 개인정보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또는 분리보관 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 ▶ 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예: 「의료법 시행규칙」 → 방사선 사진 등은 5년 보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 상시 보호조치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참조(70~73쪽)

-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 점검 필요
- 내부 직원 또는 수탁 직원에 의한 오남용 예방을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식제고 노력 필요

[YES·NO·미해당]

<p>확인1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적용 ☞ (참조)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4조)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확인2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기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 필요 ▶ 업무위탁 시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 현황 점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문서화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확인3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Q1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A. '23.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는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자율주행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조항임
동 법률 시행 이전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일부 사업자에 한하여 자율주행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었지만, '23.9월 시행 이후 현재는 별도의 실증특례 없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운행 중에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차 또는 배달로봇이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사실이 아님

Q2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지?

- A. 자율주행차가 주행 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한 후 보행자 회피 등 안전한 주행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수준의 정보 수집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그러나, 주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영상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① 정보주체(피촬영자) 입장에서 자신의 영상이 누구에게 촬영되어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② AI 학습시 중요하게 활용되는 교통사고 영상 등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진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후 AI 개발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60~63쪽 참조)

Q3

유튜버 등 영상크리에이터가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영상을 마음대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A.** 유튜버 등의 경우에도 업무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법 적용이 가능(3쪽 참조). 예를 들어, 국세청은 유튜버, BJ 등 신종 직업군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 사항임. 또한 수익 목적인 경우에는 광고물 부착을 위한 별도의 상업용 계정을 발급받아야 함

Q4

드론을 개인의 취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A.**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취미 목적 드론 등과 같이 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의 영상 촬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사적 목적 이용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본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는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개인 차량이나 화물차의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자동차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본질적인 업무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표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여 별도의 업무 목적(예 : 주행기술 개발, 지도제작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 외부에 LED를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

Q6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시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서도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기업·공공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

향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드론 비행 및 촬영승인 절차와 연계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안 검토 중

Q7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 A. 개인정보위는 영상, 이미지 등에 대해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수준을 알기 어렵다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2.)」)

해당 기준은 실제 가명정보 활용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참조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음

또한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경험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을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술적, 법률적 컨설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직접 가명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가명처리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적정성 평가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 관리적·환경적 통제방안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검토받고 싶은 경우 ‘사전 적정성 검토*’ 신청도 가능함

* 새로운 서비스·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업자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

Q8

고속도로 주행 중 촬영된 영상을 AI 학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를 가명처리 해야 하는지?

-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 자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개된 도로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학습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가명처리 할 필요가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주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번호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신원을 식별하는 시를 개발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

Q9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의 명확한 표시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지?

A.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 촬영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다만,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과 수단·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Q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해서도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하는지?

A.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는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안내서 67~69쪽을 참조하시기 바람

아울러, '운영관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침을 따로 마련하여 공개할 필요는 없음

Q1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도 녹음 기능 사용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서는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영상 촬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성 녹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따라서, 녹음된 내용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 아울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12

순찰로봇이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지?

A. 가능함. 이상상태(장애, 화재, 사고) 및 위법상황(범죄) 등 발생시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삭제해야 함

Q13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특정 영상에 포함된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권리행사 요구는 정보주체 본인 영상에 한하므로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인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Q1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등 발생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사용이 가능한데, 동 법률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규정 중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A.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내용과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사항은 동 법률이 우선 적용됨